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대형선망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10. 30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경고(20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외부감정평가 전산 무작위 의뢰 부적정

가. 외부감정평가 전산 무작위 의뢰 부적정

- 대형선망수협 본점 외 4개 영업점은 외부감정평가 의뢰 시 시스템에 허위 정보(지번 등)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차주의 대출에 대하여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선택하여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음.

나. 외부감정평가서 심사 소홀

- 대형선망수협 본점 외 2개 지점은 외부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평가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전산무작위 의뢰하여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결과 과다 감정으로 판단되는 대출을 취급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(예)」 제23조(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), 제28조(부실감정 평가서에 대한 조치), 제32조(가격조사서 또는 감정평가서 심사), 제35조(외부감정평가서의 심사)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대형선망수협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10. 30.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견책(3명), 경고(3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- 상가 대출비율 상향 부적정
 - 상업용건물(중소형상가)을 담보로 대출 취급 시 확인자료 없이 대출비율을 상향하였고, 이 중 일부 대출은 취급 당시 대출비율 상향 불가 건으로 조사되어 적정 담보 여력을 초과하여 취급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151조(담보가액 산출기준), 제151-3조(상가담보대출 취급제한)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대형선망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10. 30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경고(5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임차보증금담보대출 사후관리 소홀

- 관련규정에 따라 연 2회(4월, 10월)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일제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차주는 이미 퇴거하여 '주택임대차보호법'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상실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, 이로 인해 조합 손실 위험을 초래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5편 제263조(대상차주), 제268조(취급시 유의사항), 제270조(사후관리)